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7.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24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5년 7월 5일

제114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2005.4.22) 및 행정자치부의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 (2005.3.22)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변경하고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 사업의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전담인력 증원 : 사회복지직 8명(7급1명, 8급4명, 9급3명)
* 사회복지직 당초정원 30명 ⇒ 증원후 정원 38명
-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정원 연장승인 : 2006.12.31까지(4명)
* 야간진료 당초 존속기한 : 2005.3.31일까지
- 보건소 행정직 6급 조정 : 6급 증원1명, 7급 감축1명
(본청 6급 감축1명, 7급 증원1명)
- 기능직 지도원 10급 감축 : 서울시와 불일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감축 정원인 지도원 정원(기능10급) 감축1명
* 지도원 당초정원 58명 ⇒ 감축후 정원 57명

다. 참고사항

-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탐-612(2005.5.12)호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907(2005.3.22)호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증원은 2005. 5. 12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830명이 증원 승인되었음.

본 인력의 증원 사유는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부연하면 전국 평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324명, 서울시 평균 286명, 영등포구의 경우 352명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임. 증원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수는 사회복지과 25명, 가정복지과 23명,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인력 24명, 금번 증원 8명 총 80명이되고 1인당 복지대상자는 236명으로 낮아져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 보건소의 야간진료서비스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 3. 22 승인되었고,

야간진료 진료실적은 월 평균 26명이며 예산액은 2004년 39,750천원, 2005년 91,415천원이며, 또한 2004.5.25 개정된 본 조례안에 의하면 야간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원 4명은 존속기한이 2005. 3. 31까지로 되어 있어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단,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보건소 야간 진료서비스운영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능직 지도원 10급의 1명 감축은 서울시와 불일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요지

○ 안 부칙에 야간진료 당초 존속기한이 2005.3.31까지로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시행일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보건소 야간 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함.

5. 審査結果：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4호
----------	------------

제출년월일 : 2005. 7. 5.
제 출 자 : 김영진 위원

1. 수정이유

야간진료 당초 존속기한이 2005.3.31까지로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시행일 수정

2. 주요내용

안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보건소 야간 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보건소 야간 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단,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보건소 야간 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u></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
----------	-----

제출년월일 : 2005.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2005.4.22) 및 행정자치부의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2005.3.22)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변경하고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의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전담인력 증원 : 사회복지직 8명(7급1명, 8급4명, 9급3명)
* 사회복지직 당초정원 30명 ⇒ 증원후 정원 38명

나.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정원 연장승인 : 2006.12.31까지(4명)
* 야간진료 당초 존속기한 : 2005.3.31일까지

다. 보건소 행정직 6급 조정 : 6급 증원1명, 7급 감축1명
(본청 6급 감축1명, 7급 증원1명)

라. 기능직 지도원 10급 감축 : 서울시와 불일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감축 정원인 지도원 정원(기능10급) 감축1명
* 지도원 당초정원 58명 ⇒ 감축후 정원 57명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탐-612(2005.5.12)호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907(2005.3.22)호

나. 예산조치 : 확보되었음(별첨 비용소요 추계서)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라. 기타참고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1,291명”을 “1,298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71명

조례 제56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2005년3월31일”을 “2006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291명</u>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264명</u> 2. 현행과 같음</p>	<p>제2조 (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298명</u>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271명</u> 2. 현행과 같음</p>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98	967	27	92	21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3	638	14	79	212
3급	1	1			
4급	7	5	1	1	
5급	58	24	2	10	22
6급	172	132	3	15	22
7급	270	197	4	25	44
8급	313	207	2	23	81
9급	122	72	2	5	43
별정직 계	12	6	6		
6급상당	1	1			
7급상당	7	5	2		
8급상당	3		3		
9급상당	1		1		
기능직 계	342	322	7	13	
기능6급	5	5			
기능7급	12	12			
기능8급	35	33		2	
기능9급	86	80	3	3	
기능10급	204	192	4	8	